

---

# 환경위생분야 서비스 이행기준

---

## 1.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업무 서비스 향상

-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 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성실한 납부 안내를 통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.
-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전화 또는 방문 시 신속 정확하게 안내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## 2. 배출시설허가 및 신고업무 신속처리

- 구비 서류 중 구청에서 확인 가능한 공부는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직접 확인 처리하겠습니다.
- 1일 이상 유기한 민원 접수 시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. (10일 → 7일, 5일 → 3일)

## 3.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로 깨끗한 환경조성

-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.
-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 접수 후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.
- 석면 조사, 처리 및 관리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석면에 의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# 4. 먹는물 공동시설 및 지하수 관리 철저

-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전년도 검사 결과에 따른 등급별 차등(연 3~8회) 실시하고, 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게재하여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음용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음용 중지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용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.

- 월 1회 이상 약수터 주변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생적인 약수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.
- 깨끗한 지하수 사용을 위해 생활용수는 3년에 1회, 음용수는 2년에 1회 수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수질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# 5.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

-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.
- 분기별 무료 점검 및 지속적인 육안 감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배출가스에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.

## 6. 식품 위생관리 강화

- 안전한 식품 생산·유통 체계 확립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·불량식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국민다소비식품, 계절적 성수식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·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.
-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시설, 뷔페, 대형음식점(300㎡이상), 도시락 제조업소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생 지도·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.
- 식중독 예방 상황실 및 부정·불량식품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식품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확산 차단 등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# 7. 식품위생업소의 시설·환경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

- 음식점 등 위생업소의 시설·환경 개선과 시설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, 업소 환경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위생 및 친절 예절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위생 의식을 고취시켜 질 좋은 위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.

- 위생 상태가 우수하고 친절한 모범음식점을 연 1회 이상 선정, 지정 관리함으로써 위생적인 시설 개선,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좋은 식단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.

## 8. 공중위생업소의 관리 강화

- 업종별 위생 관리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고 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개선하여 건전한 공중위생업소를 육성, 관리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- 공중위생업소의 불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연중 지도·단속을 실시하고,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모범적인 공중위생 서비스 문화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.

## 9.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

| 서 비 스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 당    |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팩 스 (FAX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경관리담당 | 220-4381~7<br>220-4408                        | 220-4389  |
| 환경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<br>환경오염원관리<br>(배출시설, 비산먼지공사장 점검) | 환경지도담당 | 220-4391~8<br>220-0082,<br>0085~6<br>220-4388 |           |
| 자동차배출가스 단속<br>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및 지하수 관리<br>석면안전관리    | 환경보전담당 | 220-4421~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식품위생담당 | 220-4410~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공중위생관련업소 허가 및<br>지도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중위생담당 | 220-4401~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
## 10.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

- 법령 위반 사항 신고 시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신고하여 주시고 민원처리사무규칙에 의거 신고인의 신분을 사실대로 밝혀주셔야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. 신고자의 신분은 법령에 의거 비밀로 절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.